

의안번호	제 104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6월 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

의안 번호	104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6월 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 시도경제협의회규정 」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역경제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(안 제1조~제2조)
-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, 위원의 임기 등(안 제3조~제5조)
- 회의 운영, 의안 제출·배부, 의견 청취 등(안 제6조~제10조)
- 의안의 사전협의·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(안 제12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시·도경제협의회규정」 제9조에서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2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·군 간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
4.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
5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도의 경제 관련 실·국장

2. 시·군의 부시장, 부군수
3. 경제 관련 기관,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
4.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
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
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
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
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협의회
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안의 제출)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·군과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안의 배부) 협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12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시·도경제협의회규정

제9조(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) ①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·조정을 위하여 각 시·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「시도경제협의회규정」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운영
 - 협의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

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(구성)

4. 추계결과

- 산출과정
 - 협의회 참석위원 연간 수당 : 130,000원*×14명**×연1회 = 1,820천원
 - * 출석수당 : 기본수당(2시간 이내) 100천원, 초과수당(2시간 초과) 30천원
 - ** 위원 30명 중 16명 제외(경제부지사, 경제관련 실·국장, 도내 부시장·부군수 제외)
- 산출과정 : 연간 1,820천원,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9,100천원 소요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참석위원 수당	9,100	1,820	1,820	1,820	1,820	1,820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정 선 미(220-3210)